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이피알(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명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 ① 위원회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회사는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구성

제4조(위원 및 구성)

- ① 투명경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며,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위원의 이사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 ④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제1항의 구성에 미달할 경우) 지체없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신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를 선임하고,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구성에 미달할 경우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 권리, 의무가 있다.

제5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5조 제3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

제3장 운영

제6조(위원회)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 전자 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기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기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 ④ 결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참여할 수 없는 당해 위원의 의결권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3조(결의사항) 및 제14조(검토사항)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이나 정기적·비정기적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 ① 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권한 및 책임

제12조(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 내에서 제11조에서 정하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고 한다)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검토·결의·보고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거래 등에 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
 2. 내부거래 직권조사 명령권
 3. 내부거래 시정조치 건의권

제13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1. 위원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ESG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필요한 사항
3. 회사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이사의 자기거래 포함)의 심의 및 의결
5. 4호 이외의 거래 중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의결
6. 회사가 3호 내지 5호에 따라 이미 승인을 받은 사안의 거래내용(거래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에서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심의 및 의결
7. ESG 활동 관련 단기 및 중·장기적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연간 100억원 범위 내에서 건별 20억원 이상 사회공헌활동 집행
9. ESG관련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0. 외부전문인력의 조력에 관한 사항

제14조(검토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1. 이사회 부의 안건 중 ESG의 관점 및 경영판단에 있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항
2. 회사의 지배구조의 변경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ESG 정책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과 관련한 사항
4.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파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긴급한 ESG 현안 및 거래관행에 대하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13조 제3호 내지 5호의 결의사항에 대한 정당성 및 공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의무)

①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관주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경영 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3. 이사회 보고 의무: 위원회는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당해 불신임동의의 심의에 대하여도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총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정관 제41조에 의한 다음 순위의 사람이 의장이 된다.

③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총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간사 및 사무국)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 두며,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사무국은 위원회가 본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을 지원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17조(통지의무)

- ① 위원회는 제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 경우 위원장은 그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결의·검토 등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결의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9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버전1.0, 2021. 6.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버전2.0, 2023. 3.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버전3.0, 2023. 7.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